

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 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7,121천원으로서 이중 4건에 80,5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

- 2010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로 제설작업(3건) 70,500천원
- 환경미화원 퇴직금 10,000천원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-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사 업 명	지 출 결정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 출 액	이월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 목									지출결 정일자	지 출 일 자	
세 항	세세항	목									
합 계				80,500	80,500	80,500					
건설행정	경상적 경 비	201-01	2010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도로제설작업	44,000	44,000	44,000			1.29	2.20	2010평창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대비 도로제설작업 소요 사업비 지원
건설행정	자체사업	401-01	2010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도로제설작업	5,500	5,500	5,500			1.29	2.20	
건설행정	자체사업	405-01	2010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도로제설작업	21,000	21,000	21,000			1.29	2.20	
생활환경 관 리	인 건 비	101-04	환경미화원퇴직금	10,000	10,000	10,000			12.23	12.29	환경미화원(2명) 퇴직금부족액 지출